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23호 2020. 1. 20.(월)

고 시

-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----- 2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----- 8

입법예고

-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----- 10
-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8
-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--- 27
-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32

예 규

-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 개정 ----- 40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고시 제2020 - 28호

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

1. 목포시 고시 제2016-203호(2016.12.8)로 지정된 「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(061-270-343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월 20일
목 포 시 장

1.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

1) 정비구역 지정 조서(명칭, 위치, 면적)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용해동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	목포시 용해동 339번지 일원	48,470	감2,276	46,194	-

2) 정비구역 변경 지정사유서

구 분	도 면 표 시 번 호	위 치	면 적(㎡)	지정 사유
변경	-	목포시 용해동 339번지 일원	46,194	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의거하여 2016. 12. 8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나, ○ 유아원 및 주택용지 등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개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○ 기정 정비계획 중 교차로에 인접하여 위치한 어린이공원을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아원에 인접하여 배치함 ○ 또한, 기존 마을과 양울산 등산객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북쪽 상부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2019. 9. 20 전라남도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3)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, 시행시기(변경없음)

구 분	내 용	비 고
시 행 방 법	•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	
시행 예정시기	•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	
사업시행예정자	•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	

4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48,470	감)2,276	46,194	100.0	
택 지		40,998	감)296	40,702	88.1	공동주택용지
정비기반 시설용지	소 계	5,460	증)32	5,492	11.9	
	진 입 도 로	131	증) 1,481	1,612	3.5	
	주 차 장	722	증)233	955	2.1	
	어 린 이 공 원	1,587	감)254	1,333	2.9	
	완 충 녹 지	3,020	감) 3,020	-	-	
	경 관 녹 지	-	증) 1,592	1,592	3.4	
기 타	존 치 부 지	2,012	감)2,012	-	-	유아원 및 주택

5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	48,470		48,470	100.0	
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)2,276	2,276	4.7	
	제2종일반주거지역	48,470	감)2,276	46,194	95.3	

□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㎡)	변경사유
	기 정	변 경		
목포시 용해동 339번지 일원	제2종일반 주거지역	-	감)2,276	유아원 및 주택용지 등 제척되는 부지를 정비구역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함
	제2종일반 주거지역	제1종일반 주거지역	증)2,276	

나. 지구단위계획 결정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제한 내용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27	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구역	용해동 339번지 일원	-	48,470	감)2,276	46,194	'16.12.8	

□ 변경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27	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구역	○ 변경 - 위 치 : 용해동 339번지 일원 - 면 적 : 48,470㎡(기정) → 46,194㎡(변경)	유아원 및 주택용지 등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정비구역에서 제외함

다.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조서

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171	8	국 지 도 로	287	대로3-4	중로3-71	일반 도로		전남고시 제 1987-50호 (1987.6.5.)	
변경	중로	3	98	13	국 지 도 로	287	대로3-4	중로3-71	일반 도로			
기정	소로	2	556	8	국 지 도 로	22	대로3-4	소로2-171	일반 도로		목포시고시 제2006-23호 (2006.4.20)	
변경	소로	2	556	8	국 지 도 로	22	대로3-4	중로3-98	일반 도로			
신규	소로	2	169	8	국 지 도 로	52	소로2-171	용 해 동 324-28	일반 도로		전남고시 제 1987-50호 (1987.6.5.)	

□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소로2-171	중로3-98	◦ 도로 확폭 - B=8m → 13m	◦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도로 폭원 증가
소로2-556	소로2-556	◦ 종점 명칭 변경	◦ 종점이 접하는 도로 명칭이 소로2-171에서 중로3-98로 변경
-	소로2-169	◦ 소방도로 신설(환원)	◦ 정비구역 제척에 따른 기존 소방도로 환원

②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05	주차장	용해동 334-5 일원	722	증)233	955	16.12.08	
변경	105	주차장	용해동 343-1 일원					

□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05	노외주차장	◦ 변경 ◦ 위치 및 면적 변경(722㎡ → 955㎡)	용해3단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

③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83	녹지	완충 녹지	용해동 353-54 일원	3,020	감)1,428	1,592	16.12.08	
변경	83	녹지	경관 녹지	용해동 353-54 일원					

□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83	완충녹지 → 경관녹지	- 변경 - A=3,020㎡ → A=1,592㎡	용해3단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으로 인한 녹지 종류 및 면적 변경

④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공원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24	공원	어린이 공원	용해동 373-81 일원	1,587	감)254	1,333	-	

□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24	어린이공원	- 변경 - A=1,587㎡ → A=1,333㎡	용해3단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으로 인한 공원 면적 변경

5) 가구 및 획지 계획(변경)

구분	가구	면적(㎡)	획 지				비 고
			세부시설		위 치	면적 (㎡)	
기정	A	42,432	A1	공동주택	용해동 339번지 일원	42,432	
변경	A	40,702	A1	공동주택	용해동 339번지 일원	40,702	
기정	B	578	B1	유아원	용해동 320-2번지 일원	553	존치부지
폐지	-	-	-	-	-	-	-
기정	C	1,459	C1	단독주택	용해동 324-9번지 일원	1,459	존치부지
폐지	-	-	-	-	-	-	-
기정	D	722	D1	주차장	용해동 334-5번지 일원	722	기부채납
변경	B	955	B1	주차장	용해동 343-1번지 일원	955	기부채납
기정	E	1,587	E1	어린이공원	용해동 352번지 일원	1,587	기부채납
변경	C	1,333	C1	어린이공원	용해동 373-81번지 일원	668	기부채납
			C2	어린이공원	용해동 323-17번지 일원	665	기부채납

6)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

가.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건축선에 관한 계획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-	A1 (공동주택)	용 도	•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건폐율	• 30% 이하
		용적률	• 250% 이하
		높 이	• 25층 이하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도로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
-	B1 (주차장)	용 도	• 주차장 및 부대시설
		건폐율	• 50% 이하
		용적률	• 200% 이하
		높 이	• 4층 이하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도로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
-	C1, C2 (어린이공원)	용 도	• 어린이공원
		건폐율	• 40% 이하
		용적률	• 100% 이하
		높 이	• 2층 이하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도로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

※ 건축물의 배치, 형태, 색채에 관한 계획[「도시,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」 2-1-3에 의거하여 수립하지 않음(향후 공동주택 계획시 반영)]

2. 관계도면 : 정비구역(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) 및 지형도면 : 열람장소에 비치. 끝.

목포시 고시 제 2020-30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20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	불 임	참 조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78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(조서)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장미로 72	2020.1.20.	건물멸실
2	전라남도 목포시 부흥로 71	2020.1.20.	건물멸실
3	전라남도 목포시 부흥로 69	2020.1.20.	건물멸실
4	전라남도 목포시 번영로 46	2020.1.20.	건물멸실

목포시 공고 제2020-51호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·운영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. 20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2013년 준공이후 측정된 대관시설 이용료를 현 시점에 맞춰 이용료 인상 및 대관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016년부터 무료관람으로 바뀐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관범위 조정(안 제12조)
 - 대관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대관이력이 없는 다목적홀을 대관 범위에서 삭제
- 대관시설 이용료 인상(별표1)
 - 현행 1일 단위 이용료를 사용시간(3,4,8시간)별로 책정하고, 이용료 자체도 지역 내 타 대관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
 - 대관시설이용료 비교(현행·변경)

구 분	현 행	변 경 (인상률)			비 고
	1일	3시간	4시간	8시간	
세미나실	30,000원	65,000원	80,000원	110,000원	
다목적강당	70,000원	97,000원	120,000원	170,000원	
기획전시실	50,000원	250,000원	250,000원	250,000원	
다목적홀	30,000원	삭 제			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없음

7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: 2020. 1. 20. ~ 2020. 2. 10.(21일간)

9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

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:[우58613]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(문화예술과)]

10. 기타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(☎ 061-270-8286, FAX 270-35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

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[별표 1]을 [별지]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 지

[별표 1]

대 관 시 설 이 용 료 (제16조 관련)

구분	다목적강당	세미나실	기획전시실
3시간	97,000원	65,000원	1일 250,000원
4시간	120,000원	80,000원	
8시간	170,000원	110,000원	

- (주) - 1일 최대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.
- 이용료는 냉·난방 사용료, VAT 포함
 - 기획전시실은 4일 이상부터 가능

신·구조문 대비표<본문>

현행	개정안
제12조(대관범위)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 시설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<u>다목적홀</u>	제12조(대관범위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
신·구조문 대비표<별표>

현행		개정안	
[별표 1] 대관시설이용료(제16조 관련)		[별표 1] 대관시설이용료(제16조 관련)	
구분	단위	이용료	비고
기획전시실	1일	50,000원	
세미나실	1일	30,000원	
다목적강당	1일	70,000원	
다목적홀	1일	30,000원	
(주) -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(8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 1일 사용으로 간주) - 초과 사용할 경우 매 시간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가산 - 냉·난방 사용료 별도(3,500원/시간당)			

구분	다목적강당	세미나실	기획전시실
3시간	97,000원	65,000원	1일 250,000원
4시간	120,000원	80,000원	
8시간	170,000원	110,000원	
(주) - 1일 최대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- 이용료는 냉·난방 사용료, VAT 포함 - 기획전시실은 4일 이상부터 가능		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 공고 제 2020- 70 호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수도급수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. 20.

목 포 시 장

1. 개정 이유

- 상수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체 수입확대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원가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매년 증가하는 결함액 등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이 불가피함.
-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 체계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,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상수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확보하는 선에서 재정건전성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업종별 요금표(안 제26조 별표2)
- 가정용 누진제 폐지(안 제29조제2항)

3. 개정 조례(안) : 별첨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

- 「수도법」 제38조(공급규정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(요금)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-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

6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1. 20.(월) ~ 2. 10.(월) / 21일간

7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(감사실) : 특이사항 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검토 (기획예산과) : 특이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(여성가족과) : 특이사항 없음

8. 사전협의(승인) 사항

-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 : 2019. 12. 5.(지역경제과-47772호)
- 물가대책위원회 서면심의 : 2019. 12. 30.(지역경제과-50521호)

9. 예산사항

- 요금인상 적용시 목포시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연간 17억원 증가

10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수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[우58724]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

목포트윈스타 5층 목포시청(수도과)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
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수도과 (☎ 061-270-3525,
FAX 270-830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5조 중 “과태료 기타”를 “기타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과태료 징수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[별표2] 업종별 요율표(제26조 요금관련)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 [별표2] 업종별 요율표 적용은 2020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 <본문>

현행	개정안
제29조 (사용수량의 인정) ① (생략)	제29조 (사용수량의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단독주택,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, 가구별 사용량으로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사용가구별 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.</u>	② <u>삭제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5조 (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) 이 조례에 의한 요금, 가산금, 수수료, <u>과태료 기타</u>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<u>의한다. <단서 신설></u>	제45조 (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) ----- ----- <u>기타</u> ----- ----- ----- <u>따른다. 다만, 과태료 징수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

신·구조문대비표 <별표>

현행

[별표2]

업종별 요율표(제26조 관련)

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
가정용	1-20	520
	21-40	630
	41이상	680
일반용	1-100	920
	101-300	1,010
	301-1,000	1,110
	1,001-2,000	1,200
	2,001 이상	1,280
대중탕용	1-1,000	1,060
	1,001-1,500	1,140
	1,501-2,000	1,190
	2,001 이상	1,290
산업용	1-300	850
	301-1,000	900
	1,001 이상	950

개정안

[별표2]

업종별 요율표(제26조 관련) (개정)

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
가정용	m ³ 당	570
일반용	1-100	990
	101-300	1,090
	301-1,000	1,200
	1,001-2,000	1,300
	2,001 이상	1,380
대중탕용	1-1,000	1,140
	1,001-1,500	1,230
	1,501-2,000	1,290
	2,001 이상	1,390
산업용	1-300	920
	301-1,000	970
	1,001 이상	1,030

[별표 2]

업 종 별 요 율 표 (개정)

업 종 별	사 용 량	톤 당 요 금
가 정 용	m ³ 당	570
일 반 용	1-100	990
	101-300	1,090
	301-1,000	1,200
	1,001-2,000	1,300
	2,001 이상	1,380
대중탕용	1-1,000	1,140
	1,001-1,500	1,230
	1,501-2,000	1,290
	2,001 이상	1,390
산 업 용	1-300	920
	301-1,000	970
	1,001 이상	1,030

관 계 법 령 발 체 서

관 계 법 령	내 용
□수도법	제38조(공급규정)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,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<u>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
□지방공기업법	제22조(요금) ① <u>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,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,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,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□질서위반행위규제법	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<u>과태료</u> 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<u>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□지방재정법	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<u>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</u>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</u>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 공고 제 2020-72 호**입 법 예 고**

『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. 20.

목 포 시 장**1. 개정 이유**

-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정비추진 (전라남도 법무담당관-7190, 2019.6.25.호)에 의거하여,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

2. 주요 내용

- 용어 삭제 (시행규칙 안 제12조)
-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(안 제45조 및 시행규칙 안 제22조)

3. 개정 시행규칙[안] : 별첨**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****5. 관계법령**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-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

6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0. 1. 20.(월) ~ 2. 10.(월) / 21일간

7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(감사실) : 특이사항 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검토 (기획예산과) : 특이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(여성가족과) : 특이사항 없음

8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내용없음

9. 예산사항 : 내용없음

10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수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[우58724]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,

목포트윈스타 5층 목포시청(수도과)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수도과 (☎ 061-270-3525, FAX 270-830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)” 을 “(사용료 계산)” 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 기타 징수금” 을 “ 및 수수료” 로 “가산금·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” 을 “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 82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 (<u>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</u>) ① ~ ⑥ (생략)	제12조 (<u>사용료 계산</u>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2조 (소멸시효) 조례 제45조에 따른 수도요금· <u>기타 징수금</u> 에 대한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<u>가산금·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.</u>	제22조 (소멸시효) ----- ----- <u>및 수수료</u> ----- ----- ----- <u>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</u> -----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 공고 제 2020 - 78 호**입 법 예 고**

『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. 20.

목 포 시 장**1. 개정이유**

- “2018년 조례 규제개선 추진과제 30선” (법제처) 발굴 과제
 -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므로 운영기준 개정으로 부담 완화
- 운영방향과 관련된 조항 개정
 - 지자체의 책무, 운영시간, 휴관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과 일치
-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소재지 명칭 변경

2. 주요내용

- 가. 설치 기준 완화 (안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17조 개정)
 -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위원회 설치의 자율화
- 나. 운영 시간 정비 (안 제9조, 제10조 개정)
 - 1일 5시간, 주 5일 이상 개관 및 매주 월요일, 공휴일 휴관
- 다. 동 주민센터 소재지 명칭 변경(안 제21조, 제22조 개정)

3. 개정 조례안: 별첨**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****5. 관련법령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(공공시설)
-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5조(설치 및 운영), 제6조(운영방향)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 대상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
-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여성가족과) : 해당없음

7. 예산상황

- 작은도서관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유급 자원봉사자	•115,552,680원 (8,590원×59시간×19명×12월)	각 운영위원회 심의	

-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: 271,006천원 절감

	개정 전 (주 6일, 1일 10시간)	개정 후 (주 5일, 1일 5시간)	비고
예산총액	560,105,560원	289,100,200원	
관리자 인건비 (1인당)	•월 2,075,700원 •연 29,479,240원	•월 1,073,750원 •연 15,215,800원	
산출 기초	•기본급 1,975,700원 (230시간×8,590원) •정액급식비 1,200,000원 (100,000원×12월) •명절휴가비 2,370,840 (기본급60%×2회) •퇴직금 2,200,000원	•기본급 859,000원 (100시간 × 8,590원) •주휴수당 171,800원 (42,950×4주) •월차수당 42,950 •명절휴가비 1,030,800 (기본급60%×2회) •퇴직금 1,300,000원	

8. 입법예고 기간

- 2020. 1. 20. ~ 2020. 02. 10. (21일간)

9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:[우58613]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(문화예술과)]

10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(☎ 061-270-3228, FAX 270-35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각 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”을 “작은도서관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2항 중 “설립을 위한 공간, 설비, 자료 구입, 인건비, 운영경비 등 일
부를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
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- 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
제9조제1호 중 “6일”을 “5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운영시간은 1일 5시간으로 하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
적으로 운영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휴관)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주 월요일
2. 삭제
3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4.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

제17조 중 “또는 동주민센터별로 운영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, “각각 설치한
다”를 “구성 운영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주민센터”를 “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“동주민센터”를 “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부 칙 <2020.4.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설비에 대한 조건) ① (생략)	제5조(설비에 대한 조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내에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	<삭 제>
제6조(지자체의 책무) ① 목포시(이하 "시"라 한다)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<u>각 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</u>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	제6조(지자체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작은도서관</u> ----- -----.
② 시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<u>설립을 위한 공간, 설비, 자료 구입, 인건비,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</u> 지원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
③ 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,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<u>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</u> 위원을	<삭 제>

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인력)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유급자원봉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59시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운영시간)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 6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.

2. 일일 10시간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휴관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 하여야한다.

1. 매주 월요일

2. 추석과 설날연휴

제8조(운영인력) 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운영시간) -----
-----.

1. -- 5일 -----
-----.

2. 운영시간은 1일 5시간으로 하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제10조(휴관)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주 월요일

2. 삭 제

3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

3. 법정 공휴일4.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

제17조(설치) 작은도서관의 효율
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
또는 동주민센터별로 운영위원
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각
각 설치한다.

제21조(간사) 위원장은 위원회의
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동
주민센터 직원을 간사로 하여
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22조(해촉) ① 위원중에서 다음
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
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해당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
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
을 떠나게 된 경우

2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규정」에 따른 공휴일4.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위
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

제17조(설치) -----
----- 운영
위원회-----
----- 구성 운영 할
수 있다.

제21조(간사) -----
----- 행정
복지센터 -----
-----.

제22조(해촉) ① -----

-----.

1. --- 동 행정복지센터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 예규 제22호

「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.

2020년 1월 20일

목 포 시 장 김 종 식**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**

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소송대리인 수임료 등) 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,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가에 따라 지급하되,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,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의해 수임료 등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**변호사 보수 지급기준**(제7조의2 관련)

구분	소가별 지급기준	착수금	승소사례금
행정 및 민사 소송	1. 신청사건	- 본안사건 착수금의 1/2이내	- 50%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를 곱한 금액 - 화해의 성립 청구의 포기, 인락, 소취하(쌍불취하 포함) 경우 착수금의 1/2 범위 내(변론없는 소 취하와 조건부 소취하는 제외)
	2. 본안사건 가.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나.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(소송목적의 값 기준) - 5천만원 미만 -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-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- 2억원 이상	- 200만원 이내 - 300만원 이내 - 400만원 이내 - 500만원 이내 - 600만원 이내	
	3. 환송심 - 본안심리	- 본안사건 착수금의 1/2이내	없 음
기타	1. 인지대, 송달료, 검증비, 감정료 등 : 실액 2. 출장비 및 여비 : 공무원 여비 규정 중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		

※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

신·구조문대비표(본문)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소송대리인 수입료 등)</u> <u>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수</u> <u>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, 그</u> <u>밖에 소송비용을 소가에 따라 지</u> <u>급하되,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u> <u>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</u> <u>건의 중요도와 난이도, 변호사의</u> <u>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</u> <u>여 별도 약정에 의해 수입료 등을</u> <u>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.</u>

신·구조문대비표(별지)

신설 [별표]

변호사 보수 지급기준(제7조의2 관련)

구분	소가별 지급기준	착수금	승소사례금
행정 및 민사 소송	1. 신청사건	- 본안사건 착수금의 1/2이내	- 50%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를 곱한 금액 - 화해의 성립 청구의 포기, 인락, 소취하(쌍불취하 포함) 경우 착수금의 1/2 범위 내(변론없는 소 취하와 조건부 소취하는 제외)
	2. 본안사건 가.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나.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(소송목적의 값 기준) - 5천만원 미만 -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-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- 2억원 이상	- 200만원 이내 - 300만원 이내 - 400만원 이내 - 500만원 이내 - 600만원 이내	
	3. 환송심 - 본안심리	- 본안사건 착수금의 1/2이내	없 음
기타	1. 인지대, 송달료, 검증비, 감정료 등 : 실액 2. 출장비 및 여비 : 공무원 여비 규정 중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		

※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